

1. 개정 이유

- 타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규정을 정비하고,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타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(안 제31조, 안 제32조, 안 제38조)

- 제31조 중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을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으로 정비
- 제32조 중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을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으로 정비
- 제38조제3항 중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을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으로 정비

나. 재검토기한 연장(부칙 제2조)

-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·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4-03호

「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·관리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24년 3월 27일

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

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·관리규정 일부개정

「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·관리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 중 "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"을 "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"으로 한다.

제32조 중 "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"을 "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"으로 한다.

제38조제3항 중 "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"을 "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"으로 한다.

부 칙<제2024 - 03호, 2024.3.27. 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검토기한) 방송통신위원회는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

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위해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-----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1조(국가연구개발사업) ① 기금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은 「과학기술기본법령」, 「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령」 및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르되,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	제31조(국가연구개발사업) ----- ----- ----- ----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----- ----- -----.
② <삭 제>	
제32조(정책연구사업) 기금사업 중 정책연구사업의 수행은 「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에 따르되,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	제32조(정책연구사업) -----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 --- ----- -----.
제38조(기금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의 처리)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관 또는 위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해서는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재투자 등을	제38조(기금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의 처리) ③ ----- ----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----- ----- -----